

대여금고 약관

제1조 적용범위

이 약관은 대여금고 거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으며, 대여금고라 함은 은행에 설치된 금고에 다수의 보관함을 설치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신청자 중 은행이 인정하는 자(이하 "임차인")에게 대여하고, 임차인은 그 보관함을 이용하여 목적물을 스스로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제2조 보관대상

- ① 대여금고의 보관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- ② 은행은 보관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관에 적합한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물질, 부패성물질 등 보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③ 임차인이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임의 보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3조 계약기간

대여금고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, 만기 도래 시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.

제4조 인감·서명 등 신고

임차인은 대여금고 이용을 위하여 인감(또는 서명)을 신고해야 하며, 대리인을 통해 거래하려고 할 때는 대리인도 인감(또는 서명)을 신고해야 합니다.

제5조 열쇠의 보관 및 사용

- ① 대여금고 열쇠는 임차인용(예비용 포함 2개)과 은행용으로 구분됩니다.
- ② 임차인용 열쇠(예비용 포함 2개)는 임차인 책임하에 보관하며 그 관리를 은행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.

제6조 대여금고의 이용

- ① 대여금고를 열 때는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으로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임차인용 열쇠(또는 지문)를 사용한다. 단 출입허가 비밀번호 및 기 배부된 임차인용 열쇠가 일치하는 수동식 대여금고, 컴퓨터식 대여금고, 지문인식 대여금고는 최초 약정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② 임차인은 대여금고를 이용한 후 금고가 완전히 잠겼는지를 확인해야 하며, 이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③ 은행은 임차인의 요청이나 법적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대여금고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

제7조 이용시간

임차인은 대여금고를 은행의 영업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대여금고의 임의 열람

① 대여금고는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 단, 은행에서 정한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더라도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1. 화재, 천재지변 등 비상시의 경우
 2. 대여금고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 및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 또는 체납처분 압류가 있는 경우
 3. 기타 금고의 수리와 변경 등 은행사정에 의해 열람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제 ①항의 각 호에 의해 임의 열람된 금고의 물품은 규정에 의해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보증금

- ① 대여금고 거래를 시작할 때는 은행이 정한 대여금고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, 이 때 예치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② 제 ①항의 보증금은 대여금고 거래 종료 시 임차인이 내야 할 대여금고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.

제10조 거래 해지사유

- ①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1. 임차인이 해지를 신청한 때
 2. 임차인이 사망한 때
 3. 법인 또는 단체인 임차인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
 4.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법질서를 위반하여 은행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
 5. 은행이 통지무리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때
 6. 은행이 대여금고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금고의 이전, 교체 등으로 부득이 거래 해지가 필요한 때
- ② 은행이 제 ①항 4호 및 6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, 은행은 해지일 전 영업일까지 임차인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③ 은행이 임차인이 신고한 주소로 서면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
- ④ 해지 시 임차인은 이용열쇠를 은행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쇠 및 자물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제11조 보관물품 등의 임의처분

- ① 계약 해지 후 1년이 지난 경우 은행은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고 임차인의 승인 또는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여금고를 임의로 열람하여 은행의 규정에 의해 보관물품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 ①항에 의해 별도 보관 후 은행이 보관물품을 부득이 처분해야 할 경우 공탁, 경매 또는 은행의 규정에 의한 공매 등 처분방법에 따라 처분하되, 보다 유리한 가격이 기대될 때에는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처분이 곤란한 물품은 은행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.

- ③ 보관물품의 임의처분 후 은행은 남은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.
- ④ 제 ①항, 제 ②항 및 제 ③항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

제12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

- ① 임차인은 대여금고 열쇠나 신고인감을 분실, 도난, 손상하거나 연락처 등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② 임차인에 대한 은행의 통지는 본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이 은행에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하며, 임차인이 변경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③ 임차인이 대여금고 이용열쇠를 분실, 도난, 손상하여 자물쇠와 열쇠를 교체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
제13조 대여·양도 금지

대여금고 이용에 대한 권리는 대여,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제14조 면책

- ① 신고인감 또는 서명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임차인용 열쇠(예비용 열쇠 포함)를 가진 자에게 대여금고를 열람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단, 출입허가 비밀번호 및 기 배부된 임차인용 열쇠가 일치하는 수동식 대여금고, 컴퓨터식 대여금고 및 지문인식 대여금고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지 않습니다.
- ②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생긴 손해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5조 준 용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.